의안번호	제 11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

의 안 번 호	116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우리사회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

○ 충북도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(가칭)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여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'의료비후불제'를 도입하고자 함

○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착한은행 설립과 병행하여 2023년도에는 금융기관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여하고,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

○ 이에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요청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채무(미상환금 등)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사업내용 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
○ 채 권 자 : 농협은행(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
○ 주채무자 :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*

*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
○ 융자금액 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
○ 융자조건 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
○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
○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3. 참고사항

○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기본계획(안) 붙임

○ 채무보증 요청 공문(농협 충북영업본부)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5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1 **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기본계획(안)**

❑ 필 요 성

○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

○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
❑ 사업개요

○ **사업위치** : 13개소(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, 농협 충북영업본부)

○ **사업대상** :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98,356명*

* 의료수급권자 17,913명, 차상위계층 10,311명, 보훈대상자 19,937명, 장애인 50,195명

○ **대상수술** : 임플란트 식립, 슬관절·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 및 심·뇌혈관 수술(시술)

○ **사 업 비** : 2,500백만원(농협 정책자금)

○ **도비소요액** : 923백만원(농협 정책자금 이자 및 미상환금 보전)

- 미상환금 등 보전 : 773백만원(미상환율 30% 적용)
- 이 자 보 전 : 150백만원(연이율 6% 적용)

○ **대출한도** : 1인 50~300만원 / 3년간 무이자 상환

○ **사 업 량** : 830명(최소)~5,000명(최대)

○ **사업내용**

- 의료취약층의 의료비를 대납(농협)하고, 환자의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도에서는 의료비 대출자금(농협)에 대한 미상환액 및 이자 보전

❑ 착한은행 설립 방안

○ 착한은행 설립은 **재원마련, 설립절차 이행 등 중장기 검토** 필요

- 일반(인터넷)은행, 금융재단, 사업위탁 등 다각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

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- ○ 의료비후불제 및 착한은행 설립 관련 유관기관 등 자문 : 수시
- ○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의뢰 : ’22.06.
- ○ 주요병원장 등 간담회(인수위) : ’22.06.
- ○ 민간전문가 등 자문회의 : ’22.06.
- ○ VIP주재 시·도지사 간담회 정부 협조 건의 : ’22.07.
- ○ 의료비 후불제 TF팀 구성(팀장배치 9.3.) : ’22.07.
- ○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 (3회) : ’22.08.
- ○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완료 : ’22.09.
- ○ 사업추진 관련 금융기관 등 관계자 면담 : ’22.09.
- ○ 참여기관(의료기관, 농협 등) 간담회 : ’22.10.
- ○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: ’22.10.
- ○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(보건복지부) : ’22.10.
- ○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: ’22.10.
- ○ 도의회 간담회 및 채무보증 동의안 상정 : ’22.11.
- ○ 기관별 시범사업 업무 매뉴얼 등 수립 : ’22.11.
- ○ 의료비후불제 참여기관 협약 및 시범사업 개시 : ’22.12.

❑ 他 제도와 차별성

- ○ 기존의 무상지원제도와는 달리 **정책수요자의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**(융자금 상환) 부여

❑ 기대효과

- ○ 적기에 질병치료를 통한 **삶의 질 향상**(영양공급 및 사회적·정서적 안정 등) **및 기대수명 연장** 제고
- ○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**선순환**(善循環)**적 의료복지제도** 정착

붙임2 **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요청 공문(농협)*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농업인과 함께! 국민과 함께!

함께하는 100년농협

NH농협은행

수신 : 충청북도지사
(경유) 보건정책과
제목 :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요청

1.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아래의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채무보증을 요청합니다.

본 문서는 농협의 중요자산입니다

아 래

가. 사업명칭 :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
나. 채 권 자 : 농협은행(주) 충북영업본부
다. 주채무자 :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
라. 융자금액 : 이십오억원(25억원)
마.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바.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, 끝.

1571071448 40125 김준*

충 북 영 업 본 부 장

시행 : 영본(충북)43103-50571 2022.10.31. 접수 :
우 2861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산로 23 / 전화 043-229-1533 / FAX 043-257-3555
담당 : 기획역 김준규 (E-mail : dokky55@nonghyup.com) / 공개구분 : 부서공유

1571071448 40125 김준*

붙임3 관계법령 발췌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.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“주채무”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□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

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(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, 시설,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5조(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